

스포츠안전관리위원회 규정

2016. 6. 9

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체조협회(이하 “협회”) 내외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, 인명피해를 극소화하여 인적·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수들의 안전을 도모하고, 부상을 예방하는 등 안전 관리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,

제2조(적용범위) 협회에서 관리·운영하는 국가대표, 후보선수, 청소년대표, 꿈나무선수 등과 파견훈련 및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와 지도자 또는 시·도 체조협회, 생활체육의 일반 선수 그리고 지도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정관 제39조 제④항의 세부규정을 설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
2.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
3. 협회에서 관리·운영하고 있는 국가대표, 후보선수, 청소년대표, 꿈나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는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」 제2조 제27호에 따른 파견훈련 및 경기에 대한 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협회에 보고할 사항
4.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 시설에 관한 사항
5. 비상탈출구 및 전기시설에 관한 사항
6. 체조기구 설치,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7. 그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
8. 국가대표, 후보선수, 청소년대표, 꿈나무선수 등 파견훈련 및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와 지도자 또는 시·도 체조협회, 생활체육 일반선수 그리고 지도자의 부상 및 사망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
9.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 및 지도자 또는 시·도 체조협회에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실시에 관한 사항(이하 “안전교육”이라 한다)

제4조(위원회 조직 및 임기)

1.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
2. 위원은 9명 이내로 하되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3. 간사는 사무국 직원이 맡는다.
4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(직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,

1. 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시행
2.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주재
3. 각 훈련장 및 경기장의 안전관리 업무계획 결과보고 및 취합 분석
4. 재해예방 및 선수부상 예방을 위한 조치 및 대책 강구
5. 각종 사고의 조사, 원인분석, 예방대책의 강구 및 보고
6. 안전점검 및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
7. 정기총회는 연 2회로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수시로 실시
8. 안전관리업무에 관련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평가 등

제6조(스포츠안전공제회 가입)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시 예상치 못한 안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스포츠안전공제회에 가입케 함으로써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.

제7조(비상연락망 설치) 협회 또는 육성학교의 훈련장 및 경기장에 비상사태 발생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상시 비상 연락망을 설치 운영토록 한다.

제8조(예산확보) 안전관리 시설 및 운영을 위해 가용한 (최소)예산을 확보토록 권장하고 이를 반영토록 한다.

부 칙(2016. 6. 9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